



시민의 의견이 제도와 정책이 되는 의정구현

의안번호

제91호

**논산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
일부개정규칙안**

제 출 자	서승필 의원 외 5명
제출연월일	2023. 6. 8.

논산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 안 번호	제91호
----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06. 08.

대표발의자 : 서승필

공동발의자 : 김남충, 조배식,
장진호, 이태모
윤금숙

1. 제안이유

상위법령인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위원회별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의 직급 및 정원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위원회별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 직급 및 정원규정(안 제3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, 제52조
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6조

나. 기타사항

○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○ 조례안예고 : 2023. 6. 8. ~ 6. 12.(5일간)

□ 개정규칙안

논산시의회 규칙 제 호

논산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논산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전문위원)” 을 “(전문위원 및 정책지원관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1인을 둔다” 를 “1인과 정책지원관을 둔다” 로 하며, “겸직” 을 “겸임” 으로 하며, 제2항 중 “전문위원의 직급은” 을 “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의 직급 및 정원은” 으로 한다.

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성 명
입 안 자	논산시의회 의원	서승필의원 외 5명

【별표】

위원회별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의 직급 및 정원
(제3조제2항 관련)

위원회명	직위	정원	직 급
의회운영위원회	전문위원	1	6급 일반직 지방공무원
	정책지원관	1	7급 일반임기제 공무원
행정자치위원회	전문위원	1	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
	정책지원관	1	7급 일반임기제 공무원
산업건설위원회	전문위원	1	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
	정책지원관	1	7급 일반임기제 공무원

□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3조(전문위원) ① 각 상임위원회에 는 전문위원 1인을 둔다. 다만, 필 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 회 전문위원이 <u>겸직</u> 근무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② 상임위원회별 <u>전문위원의 직급</u> 은 <u>별표와 같다.</u></p> <p>[별표] [별표] (개정 2018. 7. 30.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위원회별 전문위원의 직급(제3조제2항 관련)</u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30%;">위원회명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직 위</th> <th style="width: 50%;">직 급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의회운영위원회</td> <td>전문위원</td> <td>6급 일반직 지방공무원</td> </tr> <tr> <td>행정자치위원회</td> <td>전문위원</td> <td>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</td> </tr> <tr> <td>산업건설위원회</td> <td>전문위원</td> <td>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위원회명	직 위	직 급	의회운영위원회	전문위원	6급 일반직 지방공무원	행정자치위원회	전문위원	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	산업건설위원회	전문위원	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	<p>제3조(전문위원 및 <u>정책지원관</u>) ① - -----1인 과 <u>정책지원관</u>을 둔다. ----- ----- ----- <u>겸임</u>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<u>전문위원과 정책</u> <u>지원관의 직급 및 정원</u>은 ----- -----.</p> <p>[별표] [별표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위원회별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의 직급 및 정원</u> <u>(제3조제2항 관련)</u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20%;">위원회명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직 위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정 원</th> <th style="width: 60%;">직 급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의회운영위원회</td> <td>전문위원</td> <td>1</td> <td>6급 일반직 지방공무원</td> </tr> <tr> <td>정책지원관</td> <td>1</td> <td>7급 일반임기제 공무원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행정자치위원회</td> <td>전문위원</td> <td>1</td> <td>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</td> </tr> <tr> <td>정책지원관</td> <td>1</td> <td>7급 일반임기제 공무원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산업건설위원회</td> <td>전문위원</td> <td>1</td> <td>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</td> </tr> <tr> <td>정책지원관</td> <td>1</td> <td>7급 일반임기제 공무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위원회명	직 위	정 원	직 급	의회운영위원회	전문위원	1	6급 일반직 지방공무원	정책지원관	1	7급 일반임기제 공무원	행정자치위원회	전문위원	1	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	정책지원관	1	7급 일반임기제 공무원	산업건설위원회	전문위원	1	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	정책지원관	1	7급 일반임기제 공무원
위원회명	직 위	직 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의회운영위원회	전문위원	6급 일반직 지방공무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행정자치위원회	전문위원	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산업건설위원회	전문위원	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위원회명	직 위	정 원	직 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의회운영위원회	전문위원	1	6급 일반직 지방공무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정책지원관	1	7급 일반임기제 공무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행정자치위원회	전문위원	1	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정책지원관	1	7급 일반임기제 공무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산업건설위원회	전문위원	1	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정책지원관	1	7급 일반임기제 공무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41조(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)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.

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, 직급·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2조(의회규칙)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□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제36조(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)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(이하 “정책지원전문인력”이라 한다)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·조사·연구,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.

②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③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한다.